

1. 개정이유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12조의15)

- (경력신고)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와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경력증명) 나무의사 등이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월 ~ 5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의21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의2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목진료 경력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나무의사 등의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근무처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					
				~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제	→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 나무병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량 (km, m², m³, ha)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나무의사 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나무병원	업체명		전화번호		
자격종류					
발급 번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1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귀하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수목진료경력증명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고

2. 자격 현황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연월일	행정처분 여부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일

3. 근무처

나무병원명	등록번호	업종	근무자격	근무기간
				. . . ~ . . .

4. 경력

연 번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 정도

5. 교육현황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산림보호법」 제21조1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목진료경력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 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u> <u>②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 ·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